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59>

JCCT 2024-5-42

##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근거 및 전문성 강화방안

# Basis for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Fighting and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ty

이재욱\*

Lee Jae Wook\*

**요약**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어** : 특별사법경찰,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사범, 사법경찰직무법, 수사

**Abstrac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re exercising their right to investigate areas that require expertise that is difficult for ordinary police to investigate. The fire special judicial policer are also like this, and since they investigate the specialized field of fire offenders, they require not only expertise in the firefighting field but also professional capabilities in the investigation. To achieve this, there must be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process for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o secure excellent investigative personnel. There is a lack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raining content that can systematically educate selected investigative personnel and strengthen their expertise, so improvements are needed. must also be done. Laws on controversial areas surrounding the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must be reorganized and poor investigative conditions must be improved so that the fi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r can properly perform their role.

**Key words** :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Fire criminal,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nvestigation

### 1. 서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삼림·해사·전대·세무 등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케 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형사소송법」 의거하여 이들 특수행정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수사하는 자 및 그 직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들 특수행정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부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하려는 것

\*정희원,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시간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spay051@naver.com

Dept. of Fire safety management, Mokwon Univ, Korea

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1956년 1월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되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이 법률이 제정된 후 약 5년이 지난 이후인 1961년 5월 5일 이 법률을 개정할 때 최초로 법제화가 되었다. 현재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별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뿐만 아니라 이후 교육으로 통한 전문성 확보에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여기에 더하여 잦은 보직이동과 행정업무 겸임 등으로 수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 수사여건에 있어서도 일반경찰에 비하여 제도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급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본다.

## II.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의 법적 근거

### 1. 운영관련 법률

#### 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에는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된다.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197조제1항).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제197조제2항).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45조의9). 이에 따라 「검찰청법」은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원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청법」 제46조 제2항).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검찰청법」 제48조제1항제1호).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제2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제245조의10제1항).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45조의10 제2항), 이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에 그 직무를 따로 정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삼림이나 해사 등처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한’ 범문에 근거하여 「사법경찰직무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사법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도 공통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 되지만 특별사법경찰은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크게 다르다. 직무범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특별사법경찰은 제한이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일반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나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제245조의10 제2항). 그러나 수사와 관련한 권한과 지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경찰과 같다.

#### 2) 「사법경찰직무법」

「사법경찰직무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크게 당연히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는 자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사법경찰관리로서 권한이 인정되는 자가 있다.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당연히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는 자로서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 제1항). 소년원 또는 그分院(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도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分院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 제2항).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도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조 제3항). 이 밖에도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제3조 제4항),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제3조 제5항)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4조).

검사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는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제5조제12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제6조 제10호).

### 3) 명령 및 훈령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행상의 준칙을 규정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00호, 2021. 2. 3)이 제정되어 있다.

대검찰청 훈령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대검훈령 2020. 1. 1)이 마련되어 있다.

소방청 훈령으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으로 목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이 직무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소방청훈령 제317호)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3일 전부개정 되었다.

## 2.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소관 범죄

### 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제10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에는 형벌에 관한 규정인 벌칙과 행정벌인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소방기본법」의 벌칙규정을 보면, 소방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2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

「소방기본법」의 벌칙 규정은 벌금형에 대한 규정만 있고 징역 등 자유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7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벌칙규정을 보면,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56조 제1항),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7조).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8조).

이 법률은 특정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하고자 하

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벌칙규정도 비교적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 3) 「소방시설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은 제7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벌칙규정을 보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은 3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위탁을 받은 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은 소방시설공사와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7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벌칙규정을 보면, 제조소등(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3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4조 제1항), 이 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조 제2항).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조의2).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조의3).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5조).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규정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등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조).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조).

이 법률은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다. 범행정도 사람이 사망에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6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벌칙규정을 보

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

이 법률은 다중이용업자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이 이 법률의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제6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벌칙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규정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의2).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5장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의 벌칙규정을 보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의2).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조).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관계인의 정

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III.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

소방방재청은 테마별·시기별 소방사범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 및 일제단속 강화를 위해 2023년도에는 사회적 이슈(대형화재 등), 지역 산업환경,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시·도 자율 수사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19개 본부 중 10개(52.6%) 시·도 전담팀 운영, 총 2,221명 중 전담인력 196명(8.8%)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문 자격자 배치 등 전담부서 편성·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2022년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소방방재청 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을 참고)

1. 법률위반 적발건수

2022년도에는 총 2,210건을 적발하여 2021년 대비 3.9%(93건) 감소하였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건수는 56.3%(27건) 증가한 75건으로 나타났다.

표 1. 법률위반 적발 건수

Table 1. Number of Cases Detected in Violation of Law  
단위 : 건

구분	계	위험물관리법	구) 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119법	화재예방법
22년	2,210	833	679	455	166	75	2
	100%	37.7%	31%	20.6%	7.5%	3.4%	-
21년	2,300	819	728	560	145	48	-
증감	건수 ↓90	↑14	↓49	↓105	↑21	↑27	↑2
	% -3.9	1.7	-6.7	-18.8	14.5	56.3	200

2. 송치 및 피의자 처리결과

2022년 소방사범의 송치건수는 1,351건이었고, 피의자수는 총 2,359명(법인 708, 개인 1,651)이었으며, 송치의견으로는 기소 2,126명, 불기소 233명(혐의없음 189, 공소권 없음 26, 기타 18)이었다.

표 2. 송치 및 피의자 처리결과

Table 2. Result of Transfer and Suspect Processing

단위 : 건

구분	법령위반(건)	송치(건)	피의자(명)			
			계	법인(개소)	개인	
22년	2210,	1,351	2,359	708	1,651	
21년	2,300	1,417	2,430	758	1,672	
증감	건수	↓90	↓66	↓71	↓50	↓21
	%	-3.9	-4.7	-2.9	-6.6	-1.3

### 3. 소방활동 방해사범

2022년도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보면, 사범처리가 317건(송치 262, 내사종결 3, 진행 52)이었다. 이 중 「소방기본법」 적용이 159건(50.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적용 75건(23.7%), 경찰(형법) 적용 80건(25.2%), 내사종결 3건(1%) 이었다. 업무처리는 소방 236건(송치 200, 내사종결 2, 진행 34), 경찰 81건(송치 62, 내사종결 1, 진행 18) 이었다.

표 3. 소방활동 방해사범

Table 3. Obstructing Firefighting Activities

단위 : 건

구분	발생건수	업무처리			미처리	
		계	자체	경찰		
22년	317	317	236	81	-	
21년	260	259	205	54	1	
증감	건수	↑57	↑58	↑31	↑27	↓1
	%	22.0	22.4	15.1	50.0	-100

## IV.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

### 1.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소방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사법경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확보이다.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범

죄는 일반사법경찰이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소방분야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먼저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특별사법경찰을 확보할 때부터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소방분야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신분이 부여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반공무원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수사 권한이 부여되고, 임의적 수사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부터 강제수사인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는 수사로 전환되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으로 작성한 서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서류로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이 행하여져야 하고, 영장주의 등 보다 엄격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원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에게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이외에도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번한 보직의 변경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사인력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1]

일반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면 일정 기간 법무연수원이나 해당 부처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후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의무적·강제적 명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운 업무환경과 특별사법경찰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특히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직원이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1-2년 사이의 직원이 약 25%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년 미만의 직원이 75%[3]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사법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수

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등 경찰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과정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법무연수원과 지방검찰청, 운영부서 자체 교육훈련이 전부이다.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에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 상시적으로 특사경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법무연수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685호) 제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 외에 해당관서의 수사업무를 감찰할 때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검찰청은 최소 기준인 연 1회 정도만 특강형식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4]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경우 몇 개의 부처만이 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에 직무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제1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지명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항)는 내용으로 교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시·도 소방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각 시·도 인재개발원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을 두어

있는데 교육과정이 각각 다르고 경우에는 따라서 수사실무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5] 소방청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공모체계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검·경) 및 시·도 특사경 담당자 간담회,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법 연수기관 등 맞춤형 특별사법경찰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 형식인 예규나 훈령 등에만 규정되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을 예규나 훈령이 아닌 명시적인 법령으로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기간을 지정하고, 교육 및 생활시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야 한다.

## 2.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률 정비

사법경찰직무집행법」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법률에 의한 수사권 부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즉 법률이나 타 기관장에 의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검사장 지명 방식에 의한 수사권 부여의 경우에만 지명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등이 가능할 뿐이다. 단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만이 법무부예규로 제정되어 있다.

현행 법체계안에서는 결국 검사장의 수사지휘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인데 행정체계상 검사장이 타 기관을 지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수사를 통한 기소와 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별사법경찰을 수사지휘라는 간접적 방식만으로 수사의 적법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6]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현행 「사법경찰직무집행법」은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고 직급에 따라 7급 이상이면 사법경찰관, 8급 이하이면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에 따라 단순히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선발시부터 형사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여야 하고 지명 이후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할 경우에 행정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조사 자료가 증거가 된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대한 원칙들이 적용되므로 행정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절차와 조사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는 특정법률 위반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특정법률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사건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건, 예컨대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서에 관한 죄, 재산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당해 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수사의 효율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7] 물론 이것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전제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특별채용하거나 전문수사능력이 있는 경찰관 등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8] 철도특별사법경찰과 같이 소방분야에도 수사 직렬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시

힘을 통해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9]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5조의2제2항, 제3항). 이에 따라서 법무부령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에 대해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즉시 수사개시보고(제25조)를 하여야 하며,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 그리고 이 규칙 제4절(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에 수사지휘의 원칙(제28조), 수사지휘의 일반(제29조), 수사지휘의 건의(제30조), 수사지휘의 방식(제31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에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게 된다. 물론 수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두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사건의 경중 또는 필요시에만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법률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10]

### 3. 수사여건의 개선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하여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수사여건도 미흡하다. 따라서 수사여

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첫째, 현재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소방서 단위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방서 단위로 보면 연간 1-2건에 불과한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방사범의 발생 현황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광역 소방수사팀을 확대하여 각 지역별로 일반경찰처럼 수사팀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11]

둘째, 수사장비 등 수사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전용 조사실과 전용컴퓨터 등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고, 참고인이나 감정의뢰에 따른 여비 등의 수사경비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아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13] 따라서 수사에 따르는 경비가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잦은 인사와 보직 등의 변경으로 수사와 관련한 기법이 원활하게 전수되거나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소방과 관련한 수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수사사례와 수사방법 등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방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14]

#### 4. 수사협력체계 구축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여건이 열악한 만큼 일반경찰과 원활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경찰이나 기타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형사사법정보공유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은 위 기관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법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사법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범죄경력,

주민등록번호, 기소증지에 따른 지명수배 등에 대한 조회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를 소환하기 위해서 일반경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치장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 또는 긴급체포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의뢰를 해야 하고, 지명수배나 통보 해제도 일반경찰에 전산입력을 요구해야 하며 수배된 피의자의 인수도 일반경찰에 의존해야 한다.[12]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병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방화수사의 경우에는 일반경찰과 소방특별사법경찰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소방과 경찰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 V. 결 론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관련 업무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사분야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화를 통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으로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의 개편, 형사정보의 공유, 전문적인 수사기법 관리 체계 구축 등 수사여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References

- [1]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2021],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Special Judicial Police , Institute of Justice, p.39.
- [2] Hyun-Ki Shin.[2013]. “The Study on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12 No.1 , p.14.
- [3] Yeong-Dae, Song-Ho-Dae, Jo-Dong-Joon, Kim.[2020]. “Strengthening Expertis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17 No.3, p.176.
- [4] Hyun-Ki Shin, op.cit, p.16.
- [5] Yeong-Dae, Song-Ho-Dae, Jo-Dong-Joon, Kim, op.cit, p.180.
- [6] Lee, Keun-woo.[2020]. “The Urgent Need for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Vol.32 No.3, p.50.
- [7] Lee, Keun-woo, op.cit, p.57.
- [8] Dae-Kun Jo · Euy-Hong Hwang · Don-Mook Choi.[2018]. “Study on the Metho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32 No.6, pp.100-107; Jin Chae-Seong-Cheon Won.[2009].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by Investigation Case of the Fire Crime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23 No.6, pp.142-151.
- [9] Yeong-Dae, Song-Ho-Dae, Jo-Dong-Joon, Kim, op.cit, p.183; Hyeong-Jin Park·Jung-Rae Kim·Jong-Buk Kim·jin Cha·Hyun-Seok Kwon·Si-Young Lee.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32 No.5, p.85; Jeon. Jong Jung.[2012]. “A Study on the Reinforcing Investigation Ability of the Fire Crim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12 No.3, p.85.
- [10] Yang, jae-yeol.[2015]. “A Study on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Korea Municipal Police Review Vol.10 No.1, p.222.
- [11] Yeong-Dae, Song-Ho-Dae, Jo-Dong-Joon, Kim, op.cit, p.185; Jeong HyunKyun·Hwang Euyhong·Choi Donmook[2019].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19 No.3, pp.151-156.
- [12] Jun Hyouk Choi.[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Judicial Police and National Police System -Special Judicial Police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Journal of police and law Vol.11 No.1, pp.214-215.
- [13] Han Ah Reum.[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Law Review Vol.80, p.253.
- [14] Jin Chae. op.cit, p.170.

